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일, 강득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 상정, 축조심
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4.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득구의원)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현행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시설(참고자료 1)을 정하고,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①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¹⁾, ②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²⁾, ③ 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³⁾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현행법령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는 것만으로

1) **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⑤ 생략

⑥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는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 관리방안]

구분	관리자 교육	자가 측정	오염도 검사
근거	법 제7조	법 제12조	법 제13조
주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측정대행업체 (환경검사시험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내용	①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 ② 보수교육(3년마다 1회)	① 유지기준(1회/년) ② 권고기준(1회/2년)	① 유지기준* 준수 ② 자가측정 이행 및 교육 이수
처분	과태료(5백만원 이하)	과태료(5백만원 이하)	① 과태료(1천만원 이하) ② 개선명령(1년 내)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에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하던 것을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거짓·부정 측정을 방지하여 실내공기질 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의무가 “기록·보존”에서 “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규정(법 제16조⁵⁾)의 개정

5) 법 제1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 10. 생략

④ 생략

도 필요해 보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실내공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보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inair.or.kr)(참고자료 2)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측정 및 오염도검사 결과 중 일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미등록되어 있어 기준 초과시설 관리 및 통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⁶⁾, 자가측정을 수행하는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결과 관리가 미흡⁷⁾하여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가측정과 오염도검사 결과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망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6) '25년 기준 '23년 당시 자가측정 의무 다중이용시설(24,755개소) 중 자가측정 결과(21,654개소) 및 오염도검사 결과(2,426개소)가 정보망에 일부 누락

7) '20 ~ '24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벌금 등 처분 받음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12조제1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삭제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요건과의 정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지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보고”를 “제출”로 정비하며, 제12조의6제1항 중 인용 조문 오류를 실제 오염도 검사 결과 규정에 맞게 정정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 신설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안 제12조제1항, 제12조의6제1항 및 제16조제3항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의6제1항 중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으로,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보존”을 각각 “보존·제출”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 ----- ----- ----- -----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 ----- ----- ----- ----- <u>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의6(실내공기질	제12조의6(실내공기질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 장관은 <u>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u>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 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제12조에 따 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그 밖 에 <u>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u>-----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현행 과 같음)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제12조에 따 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 사 결과, 그 밖에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정보에 국 민이 쉽게-----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 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
---	---	---

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 7의3. (생
략)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
기질 측정을 하
지 아니한 자 또
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 10. (생
략)

④ (생략)

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 7의3. (현행과
같음)

8. -----

--보존·제출-----

보존·제출-----
8의2. ~ 10. (현행
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보존”을 각각 “보존·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 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u>10년 동안 기록</u> <u>· 보존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 <u>10년 동안 기록 ·</u> <u>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 환</u> <u>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u> <u>출하여야 한다.</u> ----- ----- -----.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u>실내공기</u> <u>질의 종합적·체계적</u> 관리를 <u>위하여</u>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u>제12조제1</u> <u>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u> <u>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u> <u>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u> <u>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u> <u>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u> <u>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u> ----

②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3. (생 략)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 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 10. (생 략) ④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의3. (현행과 같음) 8. ----- -----보 <u>존·제출</u>----- -----<u>보존·제출</u>--- --- 8의2.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